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계약서

쌍방 · 상호 비밀유지

계약번호 KN20261007-L0001

갑 _____ 과(와) 을 _____ 은(는) 아래 목적으로 서로 제공하는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01 목적

정보를 주고받는 목적	예: 제품 공급 거래 검토, 공동 개발 협의, 투자 검토
관련 거래 · 사업	
계약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02 비밀정보의 정의

① "비밀정보"란 이 계약 기간 중 한쪽(제공자)이 상대방(수령자)에게 서면·구두·전자 파일 등 형태를 가리지 않고 제공하는 기술상·경영상 정보로서, 제공 당시 비밀임을 표시하였거나 그 성질상 비밀로 다루어야 함이 분명한 정보를 말한다. 제품·설계·도면·소스코드·제조 방법·원가·단가·거래처·고객 명단·사업 계획을 포함한다.

② 구두로 제공한 정보는 제공일부터 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정보임을 확인한 경우에 비밀정보로 본다.

③ 다음 정보는 비밀정보에서 제외한다. 1. 제공받을 당시 이미 공개된 정보 2. 수령자가 비밀유지 의무 없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얻은 정보 3. 수령자가 비밀정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4. 제공자가 서면으로 공개를 승낙한 정보

03 비밀유지 의무

① 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제1조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② 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제공·누설하지 않는다. 다만 목적 수행을 위해 알 필요가 있는 임직원·자문인에게는 이 계약과 같은 수준의 비밀유지 의무를 지운 뒤 제공할 수 있으며, 그들의 위반에 대하여 수령자가 책임진다.

③ 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자신의 비밀정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적어도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복제·사본은 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한다.

④ 법령이나 법원·행정기관의 적법한 요구로 공개해야 할 때는 미리 제공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최소 범위만 공개한다.

04 반환과 폐기

수령자는 제공자의 요청이 있거나 이 계약이 끝나면 일 이내에 비밀정보와 그 사본·요약본을 모두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요청이 있으면 폐기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해 준다.

05 의무의 존속 기간

제3조의 비밀유지 의무는 이 계약이 끝난 뒤에도 　　년간 유지된다. 다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유지된다.

06 권리의 유보

이 계약은 비밀정보에 관한 특허권·저작권·영업비밀 등 어떠한 권리도 수령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며, 제공자가 상대방과 거래를 체결할 의무를 지는 것도 아니다.

07 위반 시 조치

① 수령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면 제공자는 즉시 공개·사용의 중지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위반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약벌: ☐ 위반 1건당 금 　　원 ☐ 정하지 않음(실제 손해액으로 함)

08 기타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하여 정하고, 분쟁이 생기면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인)

을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인)